특수건물 화재보험 요율 적용방법

윤 동 혁
〈본 협회 보험2부 차장〉

이번호부터는 특수건물을 중심으로 한 적용실례를 살펴본다.

예 1. 사무실 전용인 4층 이상 건물

소재지 :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 20
건물구조 :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15층
보험가입금액 : 750,000,000 원

적용요건
- 물 건 : 일반물건
- 등 지 : 2등지
- 건물급수 : 1급
- 기본요율 : 0.135 %
- 층수할증 : 기본요율의 2 %

계산

○ 적용요율 산출

0.135 % (기본요율) + 0.0027 % (층수할증) = 0.1377 % (적용요율)

(0.135×2 %=0.0027 %)

○ 화재보험료

750,000,000 원×0.1377 %=1,032,750 원 …… ①

특수건물할인 25 %

1,032,750 원×25 %=258,187 원 …… ②

①－②=774,546 원 ……③

○ 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의 7 %

774,563 원×7 %=54,219 원 …… ④

○ 총보험료(③+④)

774,563 원(화재보험료)+54,219 원(신체보험료)=828,782 원(총납입보험료)

가. 위 건물에 타사무실과 방화구획이 되어있지 않은 다방이 있는 경우

계산

○ 적용요율 산출

0.135 % (기본요율) + 0.0027 % (층수할증) + 0.055 % (다방할증) = 0.1927 % (적용요율)

○ 화재보험료

750,000,000 원×0.1927 %=1,445,250 원 …… ①

특수건물할인 25 %

1,145,250 원×25 %=361,312 원 …… ②

①－②=1,083,938 원 …… ③

○ 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료의 10 %

1,083,983 원×10 %=108,393 원 …… ④

○ 총보험료

1,083,983 원(화재보험료)+108,393 원(신체보험료)=1,192,331 원(총납입보험료)

나. 위 건물에 타사무실과 방화구획된 다방이 있는 경우(다방부분 보험가입금액 : 70,000,000 원)

계산

○ 화재보험료

다방부분 : 70,000,000 원×0.1927 %×75 %
=101,167 원(특수건물할인 25 %) …… ①

그 외 부분 : 680,000,000 원×0.1377 %
×75 %=702,270 원 …… ②

○ 신체보험료

다방 부분 : 화재보험료의 10 %

그 외 부분 : 화재보험료의 7%

다방부분 101,167원×10%=10,116원…③

그 외 부분 702,270원×7%=49,158원‥ ④

○총납입보험료 ①+②+③+④

101,167원+702,270원+10,116원+49,158원

└화재보험료┘ └신체보험료┘

=862,711원 (총납입보험료)

이같이 방화구획 설치를 통해 보험료 절감을 가질 수 있다. 즉 요율적용의 유의사항 중에는 "하나의 건물이 이 할증요율표에 둘 이상의 용도에 쓰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중 최고의 할증을 그 전부에 대하여 부과한다"라는 기본원칙이 있으므로 건물사용상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료 절감이나 연소위험 감소를 위해 용도별 방화구획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

방화구획 설치 여부에 따른 보험료 혜택을 위에서 든 두 예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.

구 분	요 율	총보험료
'가'의 경우	전체 0.1927%	1,192,331원
'나'의 경우	다방 0.1927% 사무실 0.1377%	862,711원

따라서 전체 건물에서 다방부분이 방화구획이 되어있는 경우는 아닌 경우보다 329,620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.

여기서 방화구획을 좀 더 살펴보자.

방화구획은 다음과 같은 구조의 자립성 있는 간벽, 바닥 및 방화문으로 일정공간을 구획하는 것으로서 각기 해당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.

간벽 및 바닥

(가) 구조

① 비내력벽 및 바닥의 경우

○콘크리트조…… 두께 10cm 이상

○조적조…… 두께 12cm 이상

② 내력벽(방화문 포함)의 경우

○콘크리트조…… 두께 12cm 이상

○조적조…… 두께 20cm 이상

(나) 조건

① 목조 건물에서 방화구획을 위한 간벽(방화벽)은 지붕면과 양쪽의 외벽면으로 부터 50cm 이상 돌출하여야 한다.

② 풍도(환기, 냉난방용 등의 닥트)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부가 자동 방화담파를 설치하여야 한다.

③ 풍도, 급·배수관, 배전관 및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이들 관과 방화구획과의 틈을 몰탈로 메워야 한다.

예 2. 국유건물(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중 연면적이 1,000m²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건물)

소재지 : 서울시 중구 소공동 30 소유자 : 국가 건물구조 : 세멘벽돌조 슬라브 4층 용도 : 일반 사무실 보험가입금액 : 250,000,000원

적용요건
- 물 건 : 일반물건
- 등 지 : 1등지
- 건물급수 : 3급
- 기본요율 : 0.273%

계산

○적용요율산출

기본요율 : 0.273% (1등지 3급)

○화재보험료

250,000,000원×0.273%=682,500원 … ①

특수건물할인 25% 주1)

682,500원×25%=170,625원…… ②

①-②=511,875원 …… ③

○신체보험료 : 화재보험료의 7%

511,875원×7%=35,831원 …… ④

○총보험료 ③+④

511,875원+35,831원=547,706원

(총납입보험료)

주1) 특수건물지역(서울시, 직할시〈부산, 대구, 인천, 광주〉, 대전시, 전주시) 내에서 국유건물이면서 사무실 용도를 관공서로 사용할 경우에는 할인요율이 두 가지가 된다. 즉 국유할인 25%와 관공서할인 10%가 되나 이 경우 할인요율은 국유할인 25%만 적용된다.